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제출년월일 : 2003. 5. 26

제 출 자 : 정 상 혁 의원

1. 수정이유

- 조례에 명시된 근거법령의 법 명칭과 금번 개정된 법령중 미개정된 법령을 수정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재단명칭변경에 따른 재단 명칭의 수정과 일부 업무 이관에 따른 주무관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조례 제1조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조례 제2조 제3호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대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 조례 제2조 제4호의 “산업자원부예”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한다.
- 조례 제2조 제7호의 “시장재개발사업자라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 조례 제2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는 각각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로 한다.
- 조례 제5조 제3항 “산업자원부장관과”를 “중소기업청장과”로 한다.
- 조례 제13조 제3항의 “충북신용보증조합이사장”을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한다.
- 조례 제17조 제2항 “산업자원부장관에게”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한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1조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조례 제2조 제3호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채태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조례 제2조 제4호의 “산업자원부에”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한다.

조례 제2조 제7호의 “시장개개발사업자라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조례 제2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는 각각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로 한다.

조례 제5조 제3항의 “산업자원부장관과”를 “중소기업청장과”로 한다.

조례 제13조 제3항의 “충북신용보증조합이사장”을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한다.

조례 제17조 제2항의 “산업자원부장관에게”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한다.